캐슬&파밀리에 (4-1생활권 P1구역 (4-1생활권 L2블록)) 입주자 모집공고 (수루배마을 2단지)

※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, 아래사항 미이행 시 당첨 취소원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유의바랍

① 주택의 표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.10.27. 입니다. (청약자격조건의 기간, 나이,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)

■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으로 "무주택기간, 부양가족수, 청약통장 가입기간"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우선 당첨자를 선정하는 "청약가점제"가 적용됩니다.

■ 세종특별자치시에는 "세종 주택건설기준" 에 따른 "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비투기 과열지구입니다.

■ 본 아파트는 「신혼장수도 혹속대책을 위한 건기 :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1항에 규정된 "청약통장 가입자"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.

■ "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및 특별공급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, 청약통심복합도시 이전시설) 대상 복서의 공무원 및 국책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, 이전신설)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 : 부서 및 공무원 국가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국가안전 보장 및 국가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서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 등 이전신설) 대상에 해당하는 분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청약통장 가입금액 등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.

■ 본 아파트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 제한없이 신청하실 수 있으나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1항, 동조 동항 제1호오호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-13호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-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%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16.10.27.) 현재 1년이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계속 거주한 자(2015.10.27.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)에게 우선 공급

■ 입주자모집공고 공고일 현재 과천시, 세종특별자치시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청약조정지역 또는 「주택법」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분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청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.

■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창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금액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기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■ 고령자와 장애인, 다자녀가구 최대한 우선배정

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 고령자(직계존속을 모시고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) 및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) 또는 다자녀가구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구를 말함)에 대하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1조제3항에 따라 최대한 우선 배정하여 공급합니다.

■ 청약통장 및 청약금액 재한관련

- 본 아파트는 「주택법」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「주택법 제63조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저축 중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만19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청약통장 순위에 해당하는 분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.
- 「주택법」 제63조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분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만19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청약통장 순위에 해당하는 분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.
- 「주택법」 제63조제1항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분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만19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청약통장 순위에 해당하는 분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.
-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만19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청약통장 순위에 해당하는 분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.

■ 2009년 4월 1일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일부 개정으로 이후 주택법 제7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.

■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다른 주택소유 여부 등에 따라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등의 판단 착오원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유의바랍

- 주택소유 여부 등의 판단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.
- 주택소유 여부 등의 판단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.

■